의 결 번 호	제 2018 - 2호
의 결 연 월 일	2018. 3. 16. (제 1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전문위위원장 황 인 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제출연월일	2018. 3. 16.

1. 의결 주문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제6항 및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13조에 근거

○ 사용자·근로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함

3. 주요 내용

가. **의결권 전문위**에 의결권행사 **'안건 부의 요구권' 부여**(안 제8조제2항)

○ 기금본부 뿐 아니라 전문위도 안건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 (전문위 안건부의 주체) ▲(기존) 기금본부 → ▲(개정) 기금본부, 의결권전문위

-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결권 안건**을 의결권전문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 해소 가능**

○ 동 내용은 **'15년 삼성물산 합병 사건 당시 전문위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 이번에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매매 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서약서 제출 등

- **다양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여 **전문위 차원**에서 **안건 심의**를 **재요청**하는 **사항**임

※ 책임성 장치 마련 등과 연관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도 동시 개정

나. 의결권행사 표시 중 **중립 및 기권 의미 구체화**(안 제6조제3호)

* (중립)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기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

다. **다양한 자문수요**에 대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 의결권행사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 세부기준 17의2)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비상근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가 있음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원칙 규정 신설**(안 별표 1 세부기준 17의3)

○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찬성**하고,

- **위원회 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할 경우 **찬성**

* 일반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원칙 규정은 없는 지침에 상황

바. **상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종류주식 발행 관련 정관변경**시 **반대사례 명문화**(안 별표 1 세부기준 23, 26)

○ '11.4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우선주' 용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고, 종류주식 발행 관련 정관변경 반대사유로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등'을 명문화

사. **이사 선임 관련 반대 사유 추가 및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안 별표 1 세부기준 27)

○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감사의무가 소극적인 의무임을 고려하여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 선임시만 적용

○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중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아. **사외이사 선임 관련 반대 사유 추가 등**(안 별표 1 세부기준 28, 29)

○ **당해회사**와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인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함

*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사외이사 관련 조문을 고려하여 구성

○ **상근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 관련 **지침 내 상충 해소**

- 상근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임직원으로 세부기준 28. 제1호에 따르면 재선임 불가, 제3호에 따르면 재선임이 가능하여 상충소지가 있으므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해소

*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
(세부기준 28.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
(세부기준 28. 3) 재직년수가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자.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명문화**(안 별표 1 세부기준 2, 27)

○ **기금본부**는 '15.6월 **기금위 의결**에 따라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고,

-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 결과**와 **의결권 행사를 연계*** 하고 있는 바, 이를 **의결권 지침**에 **명문화**

* 국민연금이 기업에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해당기업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 반대, ▲당시 재직했던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 기금본부가 관련 내용을 `16.12월 '의결권전문위'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음

차. 기타 조문 정비 및 기존 규정 의미 구체화

○ 다수 정관변경 관련 의미 명확화(안 별표1 세부기준 7),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관련 문구정비(안 별표 1 세부기준 18 제1항),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문구 정비(안 별표 2 세부기준 35), 오기 및 문구정비(안 별표 2 세부기준 28, 32, 36)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 부여**(위원 3인이상 요구시)' 하는 등 **의결권 지침 개정**을 통해,

- **의결권행사**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이 **제고**된다는데 **의의**가 있음을 **실평위 위원 대부분**이 **이해**하고 **공감**함

○ **일부위원**은 **의결권 전문위** 위원 선발·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목 차

〈별첨〉 주요 개정사항 ·····

〔참고자료〕

〔붙임1〕 관련 법령 ·····

〔붙임2〕 해외 사례 ·····

〔붙임3〕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논의결과 ·····

〈별지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 ·····

〈별지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

〈별지3〉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 ··

〈별지4〉 국민연금기금윤리강령(안) ·····

별첨 | **주요 개정사항**

<지침 개정 관련 참고사항>

◇ 금일 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하여 제출하는 안건임

◇ 특히,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안건을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 당시 전문위가 지침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 이번에 책임성 확보 장치*를 추가 마련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전문위 차원에서 안건 심의를 재요청하는 사항임

* (책임성 확보장치)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 보유·매매 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서약서 제출

가. 의결권 전문위에 의결권행사 '안건부의 요구권' 부여(안 제8조제2항)

□ 개정 배경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기금본부와 의결권 전문위(기금본부가 요청한 안건에 한정)가 결정 중인 바,

- 기금본부가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논란이 발생

○ 실제로 기금본부가 스스로 결정한 삼성물산 합병 사안에 대해,

- 외부 기구인 의결권 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 최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관련 기금본부가 자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결권 전문위의 논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현행 '의결권전문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안건부의 권한**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결권전문위가 안건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음

* '운영규정' 제5조(운영) ②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에 **의결권 전문위**에 **의결권행사 '안건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의결권 지침' 개정**을 통해,

- **'의결권전문위 운영규정'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의결권행사 안건**이 **중요안건**인지 여부를 **상호 점검**하는 **체계 구축**

* (전문위 안건부의 주체) ▲(기존) 기금본부 → ▲(개정) 기금본부, 의결권전문위

○ 아울러, 의결권전문위의 권한·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위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결권전문위 운영규정', '윤리강령' 개정**

- 회의록 작성, 전문위 위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서약서 제출 등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 의결권 전문위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의결권행사 안건은 **의결권 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 (이하 생략) ②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단이 행사한다.

현행	개정안
	1.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안건 2.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

○ 의결권 전문위 위원이 중요안건인지 등을 판단하고 안건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7조제2항 신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자료제출 등 요청)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본부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원들의 안건부의 요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 운영규정 제2조제5호 내용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 위원들의 유가증권 보유·매매 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서약서 제출 등 책임성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 **(회의록 작성)** 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함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5조2 신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증권 보유·매매 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결권전문위 위원들에게 **부의 요구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신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개정 (제13조, 제14조 신설)**

* (참고)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관련 직원, 기금운용본부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은 거래금지(다만, 직원이 되기 전 보유 증권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매매시 신고해야 함),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의무 부여 중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장 행위 점검** **제13조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신고)** ①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의결권행사 결정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td><td>게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 및 매매한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내역을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가 있을 경우,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td></tr>
<tr><td><신설></td><td>[별지 제2호 서식]

유가증권 등 [□ 보유 / □ 매매] 신고서

본인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 또는 매매 유무
(. . 기준)
<table><tr><th colspan="2">내 용</th><th>예</th><th>아니오</th></tr><tr><td>보유</td><td>본인은 현재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td><td>□</td><td>□</td></tr><tr><td>매매</td><td>본인은 위촉 이후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매하였습니다.</td><td>□</td><td>□</td></tr></table>
2. 보유(매매)내역
<table><tr><th>거래증권사</th><th>종목명</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신 고 일 : . . .
소속: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td></tr>
</table>

현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의뢰(대리)인** ○ 성 명 :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자등록번호 : 138-83-0037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2. 금융거래 정보제공 범위** ○ 아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외 위원 위촉일 이후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 위원위촉일 | 거래 일자 | 거래 증권사 | 종목 | 거래 구분 | 거래 수량 | | | | | | **3. 동의서 유효기간 : 20 . . .까지** 20 . . . 계좌주(본인) : (인 또는 서명)

- **(이해상충 확인)** 의결권행사를 결정하는 전문위 개최시, 위원에게 해당 기업과 금전적 이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이해상충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전문위 의결**을 통해 위원을 **제척**할 수 있게 함

⇨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개정 (제15조 신설)**

* (확인내용) 해당기업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등

** (참고)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 (이해상충 확인)** ①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행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td><td>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해상충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참석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r>
<tr><td><신설></td><td>[별지 제4호 서식]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 개최연월일 :
○ 위원명 : (인 또는 서명)

<이해상충 확인내용>
본인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과 다음 각 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2.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 자문,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table><tr><th rowspan="2">체크리스트</th><th colspan="2">확인</th></tr><tr><th>해당</th><th>비해당</th></tr><tr><td>1.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td><td></td><td></td></tr><tr><td>2.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 자문,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td><td></td><td></td></tr></table>
상기 본인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결정과 관련한 이해상충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able>

- **(서약서 제출)** 위원의 **의무·준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약서*** **제출 규정 마련**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4조의2 신설)**

* (의무·준수사항)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공정한 직무수행, ▲비밀유지 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결권 전문위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하는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3. 공정한 직무수행 4. 비밀유지의무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신 설>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되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 관련 규정 개정안

○ **(기금운용지침 개정)** 의결권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지침 개정·조문 정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⑤ (현행과 같음)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2. 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5.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① ~ ④ (생략)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① ~ ④ (생략)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이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 의결권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조문 정비

<의결권 전문위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1. ~ 4. (현행과 같음)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5. <신 설>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5.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함

- 다만, 일부위원은 전문위 결정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 권한·책임은 기금본부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 불필요 의견 제시

나. 의결권행사 표시 중 중립 및 기권 의미 구체화(안 제6조제3호)

□ 개정 배경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시 관련 **기업**들은 중립, 기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 사례 발생**(POSCO, KT 등 다수)

○ 의사표시 방법 중 **중립, 기권 의미 명확화 필요**

□ 주요 내용

○ 중립의미: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권의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1. ~ 2. (생략)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1.~ 2. (현행과 같음)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유사 규정

< 중립 의미 관련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7.5. 개정) *** 현재는 폐지**

제317조(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 ①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다. 다양한 자문수요에 대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 개정 배경

○ 현재 규정되어 있는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은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과 같은 **의안분석 자문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 **가치평가**(valuation), **법령해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비한 **근거 마련 필요**

* 합병관련 분석시 가치평가를 위해 회계법인 자문이나, 사안에 따라 법령해석 등도 필요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의안분석 자분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수요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개정안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결권 행사시 의안분석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라.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17의2)

□ 개정 배경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관련 **지침에 명확한 반대근거가 없는 상황**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비상근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가 있음

* (참고) 현재도 기금본부는 지침 기본원칙 제6조(주주가치 감소초래 안건은 반대)를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정관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17의2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신설)	Ⅱ. 정관변경 17의2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 참고사항

○ (의결권행사 사례)

▶ **CJ 헬로비전 정관 일부 변경의 건(`17.3월)**

○ **(안건 주요내용)**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 축소 및 방법 변경(10일전 통지(서면) → 1일전 통지(문서, 구두))

○ **(판단기준)** 지침 기본원칙인 제6조를 적용(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에 관련된 세부기준 없음)

⇨ **(의결권행사 : 반대)**

- 기금은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에 의한 사외이사의 감사·감독기능 실효성 저해 우려로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17의3)

□ 개정 배경

○ **현행 지침**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지침에는 '이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관련 일부사항에 대한 규정만 있음

- ▲세부기준 13.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세부기준 18. ① (생략)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생략)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세부기준 20.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주요 내용

① **(위원회 설치)** 지침 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이사회 업무수행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되,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반대**하도록 함

* 상법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권한 위임 사항을 넓게 인정, 운영에 따라서 이사회를 허구화시킬 위험도 있다는 지적(회사법강의 제25판, 694면, 이철송 저)

** (이사회 기능을 약화 시키는 사례 예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A社는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사내이사를 과반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음(독립성 약화 가능)

② **(위원회 구성)** 지침 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위원회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17의3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Ⅱ. 정관변경 17의3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 참고사항

○ **(관련법령)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상 설치하도록 규정된 이사회 내 위원회*** **외**에는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상세내용 붙임 1-1 참조)

*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해외사례)** 대부분의 해외 연기금은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外 별도 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상세내용 붙임 2-2 참고)

- 한편, **APG**는 **대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또는 전담 이사)를 **설치하기**를 **기대한다는 규정**이 있음

○ **(의결권행사 사례)**

▶ **KB금융지주 정관변경의 건('17.11.20)**

○ **(안건 주요내용)** 대표이사 회장이 상시지배구조위원회(계열회사 대표이사 추천 기능 담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일체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 **(판단기준)** 현행 지침상 판단기준이 없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

* 지침 세부기준 13에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는 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판단근거가 없음

⇨ **(의결권행사 : 반대)**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있다고 판단
- 다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되어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바. 상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우선주 → 종류주식) 및 종류주식 발행 관련 반대 사례 명문화 (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23, 26)

□ 개정 배경

○ **'11.4월에 상법**은 **우선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 변경 필요**

* (우선주) 이익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시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 (종류주식) ① 이익 배당, ② 잔여재산 분배, ③ 의결권 행사, ④ 상환, ⑤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 각각의 종류주식을 모두 발행할 수도 있고 각각의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

○ 또한, **종류주식 발행 관련 반대사유**로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어,**

- **다른 사유**로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참고) 현재도 기금본부는 종류주식 발행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 설정하거나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하고 있음
(근거 : 세부기준 26에 따라 '기타 권리를 명백히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반대)

□ 주요 내용

○ **'우선주'** 용어를 **'종류주식'** 으로 **변경**

○ **종류주식 발행 관련 반대사유**로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등'**을 **명문화***

*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구체적이지 않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 설정 등 종류주식 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 포섭가능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23.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Ⅱ. 정관변경** **23.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26. 우선주 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 신 설 >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 신 설 >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Ⅱ. 정관변경 26.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주주의 과다한 권리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참고사항

○ **(관련법령) '11.4월 개정된 상법**은(개정상법) 우선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명명 (상세내용 붙임 1-2 참고)

- 상법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등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나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음**

○ **(해외사례)** 해외연기금은 우선주 발행과 관련한 정관변경에 대해 희석률, 발행 목적 및 이력, 경영권 방어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상세내용 붙임 2-3 참고)

○ **(의결권행사 사례)**

▶ CJ 대한통운, 정관 일부 변경의 건('17.3.24)

○ (안건 주요내용) 전환주식(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및 상환가액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환주식(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음) 발행 가능

→ 주주가치 희석(50% 추가발행 가정시 희석률은 33.3%(=50÷150)) 발생 가능

○ (판단기준)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

* 신주발행에 대하여 현행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인 20% 기준을 따르되 주식연계 채권발행의 경우 CB, BW 각각 10% 한도내에서 허용('16.4월 전문위원회 보고)

*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은 상환가액(발행가액 + 가산금액) 중 가산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

⇨ (의결권행사 : 반대) 전환주식의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의 우려 및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대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함**

- 다만, 일부위원은 종류주식 발행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목적으로 가급적 찬성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사. 이사선임 관련 반대사유 추가 및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27)

□ **개정 배경**

① **(이사의 감시의무) '15.3월 의결권 전문위 결정 사례*를 반영**하여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선임 반대근거**를 **지침에 명문화 필요**

* '현대자동차 등 이사 선임'('15.3) 관련, 의결권 전문위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이사였던 인원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 사외이사는 반대, 사내이사는 기권으로 결정한 바 있음

- 한전부지 매입 관련 당시 이사들이 별다른 검토 없이 대표이사에 전권을 위임하였는데 이것을 감시·감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 참고로, **이사의 감시의무 관련**,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원과 학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계와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주식회사법대계 제2판, 620면, 한국상사법학회 편저)

② **(집중투표제)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비, 지침 명확화**

* (현행) 상법에 집중투표제 근거(제382조의2, 제542조의7)가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음(제542조의7③) (상세내용 붙임 1-3 참고)

** (전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4번 과제(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로 집중투표 의무화 관련 내용이 있음, 김종인, 채이배,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계류 중

□ 주요 내용

① **(이사의 감시의무)**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임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반대근거**를 **명확히 함**

○ 즉, 감시의무 위반시 반대할 수 있도록 하되, **감시의무**는 **소극적 의무**임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이사 선임시로 하고,** (다른 회사 이사 선임시에는 미적용)

- **감시의무 대상**을 **횡령, 배임 등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행위로 제한함**

②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집중·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집중투표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의 이사 선임 제도

-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며,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현행	개정안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7.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신설>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7. 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현행	개정안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해외사례)

- (이사 감시의무 관련) ISS는 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사유 중 하나로 위험 감시(Risk Oversight)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명시 (상세내용 붙임 2-4 참고)

○ (의결권행사 사례)

<의결권 전문위 결정 사례>

▶ **현대자동차 등 이사 선임의 건('15.3.11)**

○ **(안건 주요내용)**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한전부지 매입(10.6조원) 당시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 **(판단기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바, 한전부지 매입이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부의('15.3월)

⇨ **(의결권행사 : 기권(사내이사), 반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회사의 투자여력, 매입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사 중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에 반대하고,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기권)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위원 대다수**가 **공감함**

- 다만, **집중투표제 관련**하여 **일부위원**은 상법개정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미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아. 사외이사(감사, 감사위원) 선임 관련 반대 사유 추가 등

(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28, 29)

□ 개정 배경

○ **사외이사 선임**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하고, (의결권행사 사례 참조)

-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침 내 상충 규정 해소 필요**

* 감사, 감사위원은 이사선임 및 사외이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 내용

①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 추가)

○ **중요한 지분, 거래, 사업상 경쟁·협력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에 대한 **반대 근거 마련**(안 세부기준 28. 제2호 신설)

*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마련
- (예) 금지법 §6 '...(생략)...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세부기준28. 제1호에서 사외이사 선임관련 독립성 제한기간에 대해 법령상 기준(2년)보다 엄격한 '5년'을 旣적용하고 있는 바, 일관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②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 관련 상충 규정 해소)

○ **5년 이내 당해회사,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인 **감사**와 **감사위원***은 **현 규정 세부기준 28. 제1호**** **적용**시 **재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즉, 상근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말함

** (사외이사 반대사유)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 **세부기준 28. 제3호*** **적용**시 **재선임**이 **가능**하여 **규정간 상충 소지**가 있음

* (사외이사 반대사유)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 **감사 및 감사위원**이 **상근이든, 비상근 임직원이든 모두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를 다르게 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참고) 상법 등 관련 법령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가능하도록 규정
-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8.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28.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3. (현행과 같음)
3.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4.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5. (현행과 같음)
29.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7. 이사의 선임 및 28.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신 설 >	**29.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7. 이사의 선임 및 28.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세부기준 28.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 **(관련법령)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내용 **규정** (상세내용 붙임 1-4 참조)

- **(상법)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8(사외이사 선임),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규정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동법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

○ **(해외사례)** 해외 연기금의 경우 **이사선임 반대사유**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중 **거래관계, 채무관계 등***을 규정(상세내용 붙임 2-5 참조)

  * APG, PGGM, CalPERS, CPPIB, OTPP, CalSTRS

- 다만, **대부분 포괄적 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관주의에 따라 건별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

○ **(의결권행사 사례)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판단 관련 사례**

▶ **(지분관계 관련 사례)** GIIR ○○○ 감사위원 후보('15.3.11)

○ **(안건 주요내용)** 당해회사(GIIR)의 주요주주(29.95% 보유, 2대 주주)인 회사(△△)의 한국 대표로 재직 중인 ○○○를 감사위원(사내이사) 후보의 선임

○ **(판단기준)**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 시 거래규모, 직접관련도, 재직 시기 등을 고려

⇨ **(의결권행사 : 찬성)** 감사위원 후보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후보(사내이사)로서 지침의 해석상 독립성 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 **(거래관계 관련 사례)** 삼화콘덴서 ○○○ 사외이사 후보('17.3.24)

○ **(안건 주요내용)** '15.1월까지 당해회사의 주거래은행이자 주요 차입금 조달원('16.9월 기준 차입금의 45.3%)인 신한은행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

○ **(판단기준)**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 시 거래규모, 직접관련도, 재직 시기 등을 고려

⇨ **(의결권행사 : 찬성)** 선임 시 신한은행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찬성

▶ **(경쟁관계 관련 사례)** KB캐피탈 ○○○ 감사위원 후보('17.3.23)

○ **(안건 주요내용)** '14.3월까지 당해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감사위원 후보의 선임

○ **(판단기준)**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 시 거래규모, 직접관련도, 재직 시기 등을 고려

⇨ **(의결권행사 : 찬성)** 선임 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찬성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자.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명문화(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2, 27)

□ 개정 배경

○ **기금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15.6월)에 따라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 중**으로,

-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 결과**를 **의결권행사**와 **연계하고 있음** ('16.12월 전문위 보고)

* 기금본부가 기업과의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안건(▲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참고 1】'배당관련 추진방안' 주요 내용('15.6월 기금위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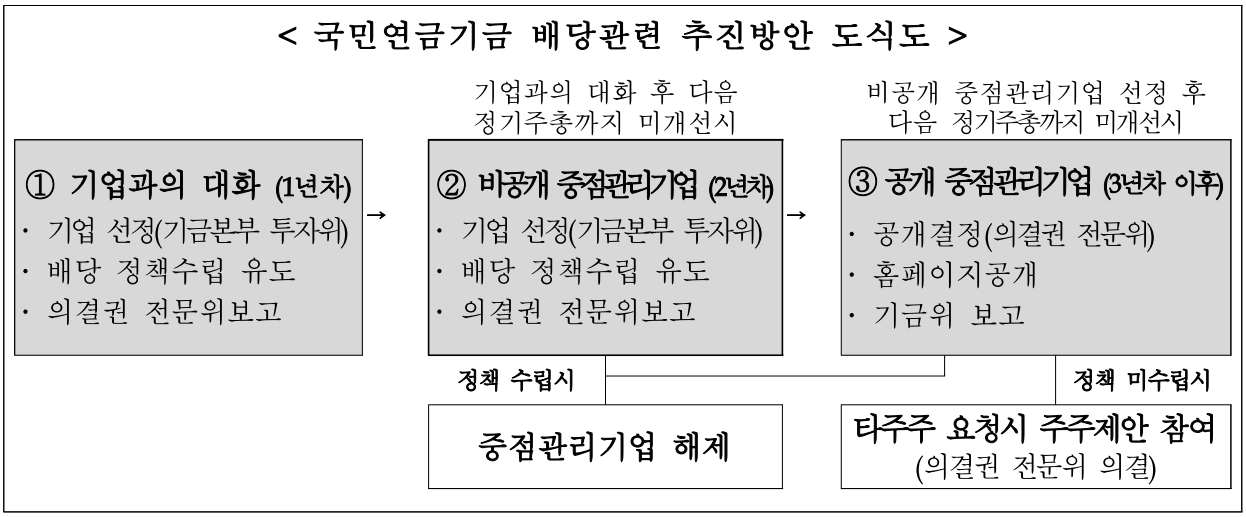
○ 사전에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배당관련 기업을 선정·대화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그에 따른 **배당**을 **유도**

① **(기업과의 대화)** 스스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등 우호적인 대화 추진**

②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 기업과의 대화를 통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개선이 없는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및 공개**

③ **(주주제안 참여)**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된 기업에 대해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참여 여부 결정**

< 국민연금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 도식도 >



【참고 2】 의결권 연계 방안('16.12월 의결권 전문위 보고)

○ 기금본부가 기업과의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배당관련 개선이 없는 기업이란?**

1.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기업
2. 배당정책을 수립하였으나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
   - 합리적 배당정책 여부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해당기업 담당 운용역 의견, 외부전문기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기업과의 대화**' **기업**으로 **선정**된 **연도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기업의 배당 규모 등은 재무제표 내용(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음

②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연도말 이후 최초 개최**되는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배당관련 기준, 절차, 기업과의 대화 결과와 **의결권행사를 연계**한다는 내용 등은 **해당기업에 기 통보함**

【참고 3】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추진 현황 ('18.2.26 현재) *** 기업명 미공개**

○ **('16년 선정기업 추진현황)**

▲('16년 : 1년차) 5개 기업 선정 및 대화 → 1개 기업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17년 : 2년차) 미개선 4개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반대 의결권 행사 → 미개선 4개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및 대화 지속

▲('18년 : 3년차) 미개선 4개 기업 중 2개 기업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 기업과의 대화 실시 총 5개 기업 중 3개 기업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 **('17년 선정기업 추진현황)**

▲('17년 : 1년차) 4개 기업 선정 및 대화 중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기업 없음)

【참고 4】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선정 기준

(배당관련 가이드라인(기금본부 내부가이드라인), '15.12월 전문위 보고)

○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실시**

- **기업 선정**시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후보 기업**에 **서면질의** (배당정책이 있는지 등) **및 답변확인, 외부 자문기관 의견청취 등 실시**

◇ **(정량적 기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보유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지분 0.5% 이상, ▲배당관련 반대의결권 행사기업 또는 배당성향 하위 10% 해당기업 중 합리적 배당정책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다만, 당기 순이익 적자 또는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기업 제외)

◇ **(정성적 기준)** ▲시장상황, ▲산업특성, ▲개별기업의 특수성(재무상황, 투자계획, 성장성, 수익성, 자본의 효율성), ▲배당정책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러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 주요 내용

①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연계)** 의결권 지침 세부기준 2(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개정

○ **기금위**가 **의결**('15.6월)한 바에 따라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함

②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연계)** 의결권 지침 세부기준 27(이사의 선임) 개정

○ **기업과의 대화(1년차)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후**에도 **대화**를 **지속(2년차)**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Ⅰ. 재무제표 승인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Ⅰ. 재무제표 승인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현행	개정안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신 설>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배당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7.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신설>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7. 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해외사례) APG, NBIM**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와의 대화**의 **충실성**을 **강조**하며 이를 **의결권 행사와 연계함**(상세내용 붙임 2-6 참고)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차. 기타 조문 정비 및 기존 규정 의미 구체화

1 다수 정관변경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7)

□ 개정 배경

○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실제 적용례에 맞추어 정비 필요**

-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의 **의미**가 변경 대상이 되는 **정관의 '조문' 개수**인지 또는 **한 개의 '조문' 안**에서 **여러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구상**으로는 **불분명**한 **상황**

- 한편, **공단**(기금운용본부)은 동 규정의 **'안건'**을 **'조문' 및 '내용'**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여러 '조문'**이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사유**가 있을 경우 **정관변경 안건 전체**에 대해 **반대해왔음**

* (적용사례) ▲현재 한 개의 정관변경 안건이 여러 개의 조문을 변경하는 경우, ▲한 개의 정관변경 안건이 한 개 조문만 변경하나 그것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내용에 반대시 세부기준 7조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 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안건'** 용어를 **통상 사용례에 맞추어 '내용'**으로 바꾸어 **정비** 등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7. 연계된 안건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Ⅱ. 정관변경 7.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 참고사항

○ (의결권행사 사례)

▶ **에이블씨엔씨 정관변경의 건('17.6.8)**

○ **(안건 주요내용)** 한 개 안건으로 여러 개의 정관 조문을 변경*

* (예시) '제1호 정관 변경안건' 으로 제1조, 제2조, 제10조 등 여러 개 조문 변경

○ **(판단기준)** 여러 개의 정관 조문 변경을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으로 해석하여 세부기준 7조를 적용

⇨ **(의결권행사 : 반대)**

- 여러 개의 조문 중 한 개 조문(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에 의한 사외이사의 감시·감독 기능 실효성 저해 우려)을 이유로 정관변경 안건 전체를 반대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2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 1(국내) 세부기준 18 제1항)

□ 개정 배경

○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관련 **반대사유**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 삭제**

- 예를 들어,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에 **근거**하여 **의결권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불필요한 논란** 발생 가능

*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 구성 등)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 (생략)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 주요 내용

○ **관련문구 삭제**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18.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Ⅱ. 정관변경** **18.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삭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참고사항

○ **(의결권행사 제한)**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이 3%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감사위원회 설치시 의결권행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됨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우선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됨**(감사위원 선임시는 의결권 제한 有)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사례)**

-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으로 감사 후보 추천시, 최대주주 등은 의결권 행사가 3%로 제한되므로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선임될 수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수주주 주주제안을 자동 폐기시킬 수 있음

○ **(의결권행사 사례)**

▶ **조선선재 정관변경의 건('17.3.24)**

○ **(안건 주요내용)** 제6호 의안으로 주주제안 감사 선임의 건 상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제2호 의안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

○ **(판단기준)** 세부기준 18조를 적용

⇨ **(의결권행사 : 반대)**

- 정관 변경의 목적이 지배구조 개선보다 주주제안을 저지하고 상법 제409조 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 회피에 있다고 판단

* '16년말 조선선재 자산규모: 1,009억원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3 이사보수한도 승인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 2(해외) 세부기준 35)

□ 개정 배경

○ **해외기업 주총**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사 뿐 아니라 임원 보상관련 안건**도 **주주총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기금본부는 현 지침에는 **이사(CEO 포함)가 아닌 임원의 보수승인 관련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기준 35 제1항**(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등을 **준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중**

○ 이에 **실제 적용례**에 맞추어 **관련 문구 정비**

□ 주요 내용

○ '이사보수한도 승인' → **'이사(임원)보수 승인'으로 정비**

현행	개정안
Ⅳ.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5. 이사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Ⅳ.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5. 이사(임원)보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4 오기 및 문구 정비(안 별표 2(해외) 세부기준 25, 28, 32, 36)

현행	개정안
Ⅱ. 정관변경 25.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Ⅱ. 정관변경 25.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현행	개정안
28. 우선주 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28.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주주의 과다한 권리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7. 이사의 선임 및 28.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Ⅲ.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29. 이사의 선임 및 30.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Ⅳ.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6. 감사보수한도 승인** 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Ⅳ.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6. 감사보수한도 승인** 35. 이사(임원)보수 승인을 준용한다.

□ **의결권 전문위 논의결과 :** 개정내용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함

붙임1 관련 법령

1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관련

○ 법령상 별도 규정된 이사회내 위원회 외에 정관에 따라 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2 종류주식의 정의 등

○ 개정상법은 우선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명명

* (우선주) 이익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시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 (종류주식) ① 이익 배당, ② 잔여재산 분배, ③ 의결권 행사, ④ 상환, ⑤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각각의 종류주식을 모두 발행할 수도 있고 각각의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

○ 상법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등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나 이를 구체화하지 않음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3 집중투표제

○ 상법은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을 규정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중요한 거래관계 등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규정

- 상법시행령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와 유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5 국민연금 배당관련 권리행사와 자본시장법령상 관련 규정

○ **배당관련 권리행사**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로,

- 이러한 주주권행사시 **신속한 지분변동 신고** 등 **의무**가 **발생***하나,

*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시

- 5%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1%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보고하는 의무가 발생
- 10%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1주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보고, 6개월 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

-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4.12.9)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붙임2 해외 사례

1 사례조사 대상(총 12개 기관 : 연기금 10개, 전문기관 2개)

구 분		의결권행사지침 명칭
유럽 (3)	NBIM	Global Voting Guidelines
	APG	ABP Voting Policy
	PGGM	Global Voting Guidelines 2016
북미 (4)	CalPERS	Governance & Sustainability Principles
	CPPIB	Proxy Vot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OTPP	2017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Proxy Voting Guidelines
	CalSTR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아시아 (3)	GPIF	Proxy Voting Principles
	PFA	PFA Guidelines for the Excercise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NZSF	2014 NZ Proxy Voting Guidelines(ISS NZ Proxy Voting Guidelines)
기타(2)	ISS	US Summary Proxy Voting Guidelines
	Glass Lewis	US Proxy Paper Guidelines

구 분	이사회내 위원회[1]		이사선임	사외이사 선임
	설치	구성	감시·감독	독립성
NBIM	-	-	-	-
APG	O	-	-	O (포괄)
PGGM	-	-	O	O (명시)
CalPERS	-	-	-	O (명시)
CPPIB	-	-	-	O (포괄)
OTPP	-	-	-	O (포괄)
CalSTRS	-	-	O	O (명시)
GPIF	-	-	-	-
PFA	-	-	-	-
NZSF	-	-	-	-
ISS	O	-	O	O (명시)
Glass Lewis	-	-	-	O (명시)

1) 감사·보수·이사추천위원회 제외

※ 참고

구 분	영문명	한글명
NBIM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노르웨이 국부기금
APG	APG Asset Management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PGGM	Stichting Pensioenfonds Zorg en Welzijn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OTPP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온타리오주 교직원연금
CalSTRS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캘리포니아주 교직원연금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일본 공적연금
PFA	Pension Fund Association	일본 연금기금협회
NZSF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뉴질랜드 노령연금기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
Glass Lewis	-	-

2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 대부분의 해외연기금의 경우 감사·보수·이사추천위원회 외에 별도 위원회 신설 관련 규정 없음

▶ APG

- 지속가능 관련 이슈에 대해 별도 위원회 신설 규정

B1. Board-related agenda items

1.1 Appointment of executive and non-executive directors_Board committees

· At larger companies and those in high impact sectors in particular, we expect that responsibility be allocated at board level for relevant sustainability issues. This could for example be in the form of a dedicated board member or a board committee.

▶ ISS

- 적정한 감시·감독 방법에 대한 회사의 재량을 제한하므로, 위원회 신설 관련 주주제안에 원칙적으로 반대

Establish Other Board Committee Proposals

· Generally vote against shareholder proposals to establish a new board committee, as such proposals seek a specific oversight mechanism/structure that potentially limits a company's flexibility to determine an appropriate oversight mechanism for itself. However, the following factors will be considered:

- Existing oversight mechanisms (including current committee structure) regarding the issue for which board oversight is sought;
- Level of disclosure regarding the issue for which board oversight is sought;
- Company performance related to the issue for which board oversight is sought;
- Board committee structure compared to that of other companies in its industry sector; and
- The scope and structure of the proposal.

3 우선주 발행 시 고려사항 명시

○ 우선주 발행에 따른 희석률, 의결권, 발행 목적 및 이력, 경영권 방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PGGM

- 우선주 발행에 따른 희석률, 의결권 등을 고려

Preferred Stock

· Vote For the creation of a new class of preferred stock and/or for issuance of preferred stock up to 50 percent of issued capital unless the terms of preferred stock would adversely affect the rights of existing shareholders.

· Vote For the creation/issuance of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s long as the maximum number of common shrares that could be issued upon conversion meets PGGM Investment's guidelines on equity issuance requests.

· Vote Against the creation of a new class of preferrence shares that would carry superior voting rights to the common stock.

· Vote Against the creation of a blank check preferred stock.

· Vote Against the creation of a blank check preferred authorizations.

▶ OTPP

- 통상 이사회 재량으로 의결권, 배당, 전환 등의 권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의 발행 등에 반대

4.4 "BLANK-CHEQUE" PREFERRED SHARES

· We will generally not support either the authorization of, or an increase in, "blank-cheque" preferred shares.

■ "Blank-cheque" preferred shares usually carry a preference as to dividends, rank ahead of common shares upon liquidation, and give a board broad discretion (a blank cheque) to establish voting, dividend, conversion and other rights in respect of these shares.

■ "Blank-cheque" preferred shares might provide corporations with the flexibility needed to meet changing financial conditions. They may also be used as a vehicle for a defence against hostile suitors, or may be placed in friendly hands to help block a potential takeover bid. A concern for many shareholders is that once these shares have been authorized, shareholders have no further power to determine how or when these shares will be designed and allocated.

▶ ISS

- 우선주 발행 시 발행 이력, 발행 목적, 희석률, 경영권 방어 등을 고려

Preferred Stock Authorization

· **General Recommendation:** Vote for propos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authorized preferred shares where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crease is to issue shares in connection with a transaction on the same ballot that warrants support.

- Vote against proposals at companies with more than one class or series of preferred stock to increase the number of authorized shares of the class or series of preferred stock that has superior voting rights.
- Vote case-by-case on all other propos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shares of preferred stock authorized for issuance. Take into account company-specific factors that include, at a minimum, the following:
  - ■ Past Board Performance: The company's use of authorized preferred share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 ■ The Current Request: Disclosure in the proxy statement of the specific purposes for the proposed increase; Disclosure in the proxy statement of specific and severe risks to shareholders of not approving the request; In cases where the company has existing authorized preferred stock, the dilutive impact of the request as determined by an allowable increase calculated by ISS (typically 100 percent of existing authorized shares) that reflects the company's need for shares and total shareholder returns; and Whether the shares requested are blank check preferred shares that can be used for anti-takeover purposes.

④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

○ ISS는 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사유 중 하나로 위험 감시(Risk Oversight)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명시

▶ ISS

- 위험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대하되, 고려할 요소들을 열거

Governance Failures

·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vote against or withhold from directors individually, committee members, or the entire board, due to:

- ■ Material failures of governance, stewardship, risk oversight, or fiduciary responsibilities at the company;
- ■ Failure to replace management as appropriate; or
- ■ Egregious actions related to a director's service on other boards that raise substantial doubt about his or her ability to effectively oversee management and serve the best interests of shareholders at any company.

5 사외이사 선임 관련 기준 명시(독립성 관련 규정)

○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으로 거래관계, 채무관계 및 이해상충 여부 등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해외연기금의 경우, 이해관계의 대상 범위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외에 정부 또는 소액주주의 대리자 등 이해관계자 포함

▶ NBIM

- 경영진, 주요주주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규정하였으나, 관련 요건을 명시하지 않음

Board Composition_Board independence

· Boards should be composed of highly qualified individuals with independent and diverse perspectives. In non-controlled companies, the majority of shareholder-elected board membe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management, major owners and related third parties.

▶ APG

-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 판단 시 ICGN Global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 준용하며, 거래관계, 채무관계 및 이해상충 관련 포괄적 규정

B1. Board-related agenda items

1.1 Appointment of executive and non-executive directors_Independence of directors

· Is there an existing business and/or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on-executive director which could influence the latter's independence?

· Are there direct business ties between a company and its directors? If there is a substantial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one of its non-executive directors, we do not regard this director as independent.

· Are there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hrough cross-directorships or directorships in closely related industries?

[참고] ICGN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2.5 Independence

· The board should state its reasons if it determines that a director is independent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which may appear relevant to its determination, including if the director:

■ is or has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been a partner, director or senior employee of a provider of material professional or contractual services to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 is or has been a nominee director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or the state

▶ PGGM

-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선임 전년도에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
- 이해관계자로 정부를 대표하거나, 고객, 공급사, 채권자 등 회사와 거래가 있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등 규정

4. Board of directors_Non-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

· Any director who has had an important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or a company associated with it, in the year prior to the appointment. This includes the case where the supervisory board member, or the firm of which he is a shareholder, partner, associate or adviser, has acted as adviser to the company (consultant, external auditor, civil notary and lawyer) and the case where the supervisory board member is a management board member or an employee of any bank with which the company has a lasting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 Government representative

· Represents customer, supplier, creditor, banker, or other entity with which company maintains transactional/ commercial relationship

▶ CalPERS

- 일정 금액 이상의 자문계약, 거래관계 등을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회사와 계열회사를 이해관계 대상으로 범위 명시

B. Board Quality: Diversity, Independence and Competence

6. Director Independence

· The board's definition of "independence" should address, at a minimum, a director who:

c. Is not affiliated with a company that is an adviser or consultant to the Company or a member of the Company's senior management during any 12-month period in the last three years that has received more than $50,000 from the Company.

d. Is not a current employee of a company (customer or supplier) that has made payments to, or received payments from the Company that exceed the greater of $200,000 or 2 percent of such other company's consolidated gross revenues.

e. Is not affiliated with a not-for-profit entity (including charitable organizations) that receives contributions from the Company that exceed the greater of $200,000 or 2 percent of consolidated gross revenues of the recipient for that year.

g. Has not had any of the relationships described above with any parent or subsidiary of the Company.

▶ CPPIB

- 회사 또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

III. Board of Directors_Independence

· A director is independent if he or she has no direct or indirect materi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or the company's senior management or controlling shareholder. A material relationship is a relationship which could, in the view of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reasonably be expected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an individual's independent judgment.

▶ OTPP

-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

1.1. Independent Boards of directors

· We support an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s. Ordinarily, we will not vote against a corporation's director candidates simply because they fail to meet the independence standard. We will consider not supporting a director's election to the board if in our view:

- a director's (or directors')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may compromise their independence.

▶ CalSTRS

-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관계 등을 이해관계로 규정

A. Board of Directors

1. Board Composition_b. Board Independence

· Directors should seek to avoid the appeara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by not engaging in any related party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Directors are not considered independent if they own 20 percent or more of the company, they are employed by a company that owns 20 percent or more interest in the company or they engag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excess of $120,000.

▶ GPIF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며, 행사 시 각 국가별 지배구조규범을 따르도록 명시

III. Board of Directors_Independence

· Asset managers should exercise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Corporate Governance Codes established by individual countries. When there is no such code or equivalent, asset managers should appropriately exercise voting right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that they require investee companies to follow.

▶ PFA

- 감사 선임 관련 독립성 규정하였으나, 관련 요건은 명시하지 않음

1. Proposals on appointment of corporate auditors

· Outside corporate auditor candidates must, in principle, be independ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independence of the overall board of corporate auditors is considered guaranteed.

6 주주-기업간 대화와 의결권 연계 사례

○ APG, NBIM은 주주와의 대화 등에 비협조적인 경우 이와 연계한 지침 보유

▶ APG

-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주주와의 대화에 대한 충실성을 언급

>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voting policy**
>
> 2. Accountability - The directors of a company must be accountable to its shareholders, and also make themselves available for dialogue with shareholders.

▶ NBIM

-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중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행동을 고려

> **BOARD ACCOUNTABILITY_Reflection of shareholder decisions**
>
> In board elections, we will consider if the board has:
>
> • Failed to act on material requests from shareholders

붙임3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논의결과

□ 논의 결과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 부여**(위원 3인이상 요구시)' 하는 등 **의결권 지침 개정**을 통해,

- **의결권행사**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이 **제고**된다는데 **의의**가 있음을 **실평위 위원 대부분**이 **이해**하고 **공감**함

○ **일부위원**은 **의결권 전문위** 위원 선발·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실평위 위원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① 의결권 전문위 독립성 문제

○ 의결권전문위가 정부나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

○ **전문위 위원 위촉**은 **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금위 소속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위촉하는 구조임**

-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도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의결권 전문위 책임성 문제

○ 다양한 책임성 장치 마련은 좋으나, 투명성 확보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의결권전문위에서 잘못된 결정이 나와도 결국 위원 개인의 명예실추 정도의 책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손해배상** 뿐 아니라 허위로 이해상충 확인서 제출시 형법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음**

③ 안건부의 요구권의 실효성(실행가능성) 문제

○ 다수의 안건을 검토해야 하나 위원들은 정보가 부족함

○ 주총안건이 제시되는 시점도 촉박하여 위원 3인이 합의하여 안건부의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 3인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 기금본부는 **평소 언론 모니터링 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매일 제공, 주총 안건 확보 즉시 안건 송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금번에 기금본부가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

○ **'위원 3인 이상 요구'** 조건을 정한 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원칙***을 따른 것임

* 회의소집 요건이 재적위원 1/3임 → 전문위 위원(총9인)의 1/3인 3인 이상 요구할 경우 안건부의가 되도록 함

④ **의결권행사 주체 변경 문제**(기금본부 → 의결권 전문위)

○ 소수의 쟁점이 있는 중요 안건을 모두 전문위에서 요구하여 결정할 우려가 있음.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의결권행사 주체가 의결권 전문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 **의결권전문위**의 **'안건부의 요구권'**은 **위원 3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 **모든 중요 안건**이 **전문위**에서 **결정**된다는 **우려는 적절치 않음**

○ 참고로, **전문위 단독**으로 의결권행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기금본부**도 회의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지원·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⑤ **기타**

○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와 의결권행사 연계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됨

○ 현재 **기업과의 대화**는 **특정 수준**의 **배당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금본부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 주주이나, 전문위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음

○ **의결권전문위 결정**시, **기금본부**에서 **관련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본부 실무자 등**도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금본부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임

<별지 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

2018. 3. 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선관주의)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주주가치 증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의2(책임투자)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행사대상) 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행사기준

제6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정한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3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단이 행사한다.

1.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안건

2.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

③ 의결권 행사시 의안분석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기금 외의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행사절차 등

제10조(공시 및 제출) ①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2.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 이 경우 그 내역을 별표 2에 따라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②기금운용본부는 분기별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하여 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12조(기록 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권 행사지침 검토주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5의2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6.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7.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8.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9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0.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1.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2.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3.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4.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5.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6.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7.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의2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17의3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8.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0.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1.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2.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3.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4.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5.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6.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7.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기금운용본부의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3.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4.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5.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29.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7. 이사의 선임 및 28.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세부기준 28.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0. 이사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31. 감사보수한도 승인

30.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2.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1]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1)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

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4.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

35.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6.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Ⅶ. 자본의 감소

37.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Ⅷ. 기타

38.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39.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0.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1.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2.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별표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연계된 안건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위원회
19.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0.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21. 위원회 구성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제안을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2.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3.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4.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5.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6.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8.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9.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30.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

다음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8.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9.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10. 그 밖에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제30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자
2.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자
3.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과도하기 장기인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9. 이사의 선임 및 30.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33.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외부감사인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수 책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 다음의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한다.

1. 회계장부나 감사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충분한 설명 없이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3.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유사기업 평균에 비해 크게 높거나 비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경우

② 외부감사인의 임원이 해당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대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4. 주요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안건

주요임원의 보상을 주주총회의 권고안건으로 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보상에 대한 공시수준, 보상의 성과와의 연계성,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5. 이사(임원)보수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36. 감사보수한도 승인

35. 이사(임원)보수 승인을 준용한다.

37.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9.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

40.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41.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Ⅶ. 자본의 감소

42.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Ⅷ. 기타

43.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4.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5.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6.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 전에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7. 관계자 거래

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이해관계의 정도, 거래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반대한다.

[별표 3]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양식

일련번호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	주주총회 일자	의결권 행사내역			
			의안 내용	의안 1	의안 2	의안 3
			행사 내용			
			반대 또는 기권시 사유			
			반대 또는 기권시 근거조항			

<별지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2018. 3. 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개요) ①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서 현행 국민연금관련 법령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거래기관 등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이하 “기금운용관련자”라 한다)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관련법령 등의 허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조(지침의 목적) ① 이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기금운용 관련자의 윤리기준과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② 이 지침은 운용목표, 투자정책, 윤리강령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위탁투자 관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③ 이 지침은 기금운용지배구조 등 내부적 운용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④ 이 지침은 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의 관리책임을 완수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치한다.(법 제101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102조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2.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3.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4. 기금운용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6. 위탁운용 목표범위 결정
7.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8.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심의
9.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1.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자산 구성과 기금의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관련 법률안 기안
2. 전략적 자산배분안 작성
3.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작성
4.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작성
5.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평가)
6. 기금운용체계 개선
7. 기금운용 모니터링
8. 기금운용위원회 의안 상정 및 위원회 운영
9. 공단의 기금운용규정,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 지도감독

④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1.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2. 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6.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운용본부 전체 및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 내·외부 성과평가보고서 검토
2.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3. 보상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행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 등 주요 기금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언
2. 전술적 자산배분
3. 투자의사결정과 이를 위한 연구 및 사후관리
4.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
5. 기금운용규정 작성,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6.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
7. 기금운용 성과평가(내부평가)
8. 기금운용 현황의 보고와 공시
9. 기금운용의 감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금운용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장 투자정책

제6조(목표수익률) ① 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조정치는 목표수익률이 위험한도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치의 수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위험한도) ①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Shortfall Risk)을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5년 후 최저적립금 비율(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적립금 규모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금의 기댓값으로 나눈 비율), 연간손실확률(연간 운용수익률이 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극단손실(expected tail loss)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되,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연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의 공공부문에의 투자한도를 정하며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국채의 매입에 의한다.

제9조(복지사업) 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② 기금의 복지사업 대여이자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준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인 해당기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5년인 경우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어야 함)

제10조(목표 초과수익률) ① 공단은 액티브운용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한 총 위험을 고려하여 대체투자를 제외한 금융부문 전체의 목표 액티브위험(Active Risk, 실제 운용이 벤치마크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함)과 목표 IR(Information Ratio, 초과수익률을 액티브위험으로 나눈 값으로 액티브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을 정함으로써 목표 초과수익률(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액티브위험 × 목표 IR로 계산됨)을 결정한다.
③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액티브 운용의 효율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 액티브위험을 목표 초과수익률이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자산군별로 배분하고 그 배분 결과를 목표 초과수익률이 적용되는 연도에 최초로 개최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전술적 자산배분) ① 전술적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며,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전술적 자산배분을 할 때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산군 분류) ① 자산군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변화 하는데 있으므로 기금은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③ 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제13조(외환관리 정책) ① 외환관리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익스포저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② 외환관리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익률 제고
3. 대규모 환 손실로부터 기금 보호

③ 해외투자 및 외화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USD) 이외 통화로 표시된 해외채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100%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p 범위에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환율변동 시 수익률 방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외환익스포저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외환익스포저가 특정 통화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통화구성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해외주식·해외채권은 벤치마크의 통화구성을 추종하고 해외대체투자는 통화블록별 범위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벤치마크지수) ① 벤치마크지수의 설정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③ 자산군별 세부 벤치마크지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기금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자산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⑤ 벤치마크지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다.
③ 공단은 위탁운용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위탁운용사에게 운용사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점진적 도입을 유도하여 향후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공단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제16조(자산별 세부투자지침)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3장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제17조(책임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① 기금의 보유 주식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다.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이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8조(위험의 인식 및 측정) ①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1.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통계적으로 산출한 값인 Value at Risk(VaR)로 측정할 수 있다.
2. 신용위험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노출금액(Exposure), 예상손실(Expected Loss), 비예상손실(Credit VaR)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유동성위험 :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4. 법규위험 :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보게 될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5. 운영위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보이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말한다.

② 인식된 위험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해당 위험량은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의 관리) ① 공단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공단 내에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리스크관리센터를 두며, 리스크관리센터장은 기금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④ 공단은 전략적 자산배분 및 액티브 위험 배분을 바탕으로 연단위로 총위험한도와 자산종류별 위험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실제 기금의 위험을 점검하여 설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와 설정된 위험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위기(기금이 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 상황이 발전·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내부통제) ①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준법감시인을 둔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 및 관리
2.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
3. 기금운용 관련 준법교육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이사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업무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21조(성과평가) ① 운용성과의 평가는 기금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벤치마크와의 정량적 비교 평가 뿐 아니라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③ 국민연금연구원 및 외부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을 준용하여 신뢰성을 확

보한다.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전체에 대해서는 금액가중수익률을 병기한다. 다만, 자산의 투자조건 등 상황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포함한 총수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제22조(보상정책) ① 보상정책은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서 정하며,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① 윤리기준은 기금운용에 관련된 자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건복지부, 공단,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등 기구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 등을 포함한다.

③ 기금운용관련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Fiduciaries)로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진다. 따라서 기금운용관련자들은 오직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전문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윤리기준의 세부사항은 '이 지침의 부속서인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 및 감사) ① 공단은 기금의 운용자산 및 위험관리 현황, 운용성과, 의결권 행사기준 및 내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공단의 감사는 매반기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또는 월간 자금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4. 그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업무설명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①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별표 4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종목 등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단은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금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인쇄물,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5.6.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 개정사항은 2015년 국고채 최초 선매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주식 의결권 행사"를 "주식 의결권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연금재정팀장"을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6.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채권 환헤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채권의 미국 달러화(USD)와 원화(KRW) 간 전략적 환헤지비율 목표는 2017년말 50%, 2018년말 0%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제11조제2항 관련)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1)]	±2.0	±3.5	±1.5	±0.5	±1.2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	±5.0	±2.0	±2.0	+1.2/-2.2
총 허용범위	±5.0	±8.5	±3.5	±2.5	+2.4/-3.4

1)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목표비중으로 간주하고,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리밸런싱)

[별표 2]

벤치마크지수(제14조제2항 관련)

1.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 Korea, hedged-to-KRW)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 (목표비중 설정방식 마련 전까지는 실제비중 사용)

※ 성과평가시는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 방식을 적용

2. 제1호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편입할 개별 종목들의 모집단(Universe)을 정하고, 이 모집단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모집단 기준지수(Universe-based Index)방식에 따른다.

-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 편입대상

항 목	편입대상 조건
발행시 만기	1.5년 이상
투자대상등급	BBB+ 이상[1)]
발행잔액	300억원 이상
제외 대상	주식관련채권, 사모사채, 주가연계채권(ELN), 파생연계채권(DLS), 변동금리부채권(FRN), 후순위채[2)], 후후순위채, 옵션부채권[3)]

1)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편입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말에 일괄적으로 유니버스에서 제외

2)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유니버스에 편입(단, 하이브리드 증권은 후후순위채이므로 제외)

3) 옵션부채권 중 Call, Put 또는 Call/Put 옵션부 은행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유니버스에 편입

4) 각 종목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유니버스에 편입(단, 국고채 선매출의 경우 대금납입일부터 유니버스에 편입)

3. 제1호 중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는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 목표’와 ‘성과평가’의 두 가지 벤치마크로 구분한다.

가.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장기수익률 목표, 10년)
국내 PE	(국내주식 벤치마크 + 2.5%)×0.6 +(국내채권 벤치마크 + 1.5%)×0.4
해외 PE	해외주식 벤치마크 + 3.0%
국내부동산	국내 CPI 상승률 + 5.0%
해외부동산	해외 CPI 상승률 + 5.0%
국내 인프라	국내 CPI 상승률 + 4.0%
해외 인프라	해외 CPI 상승률 + 5.0%
헤지펀드	미국단기금리(T-bills 90일물) + 4.5%

나. 성과평가 벤치마크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지수
국내 PE	(KOSPI 3년 연평균 수익률+ 2.5%)×w1[1)] + (국내채권 BM 3년 연평균 YTM + 1.5%)×(1 - w1)
해외 PE	동종유형 비교 지수(Peer Group Index) 수익률(IRR)
국내부동산	IPD 한국지수 × w2[2)] + [국내CPI 상승률(실제치) + 5%] × (1 - w2)
해외부동산	주요 투자대상 7개국 IPD Country Index 가중평균 지수
국내 SOC	[국내 CPI 상승률(실제치) + 4%] × w3[3)] + [기존 투자자산 실제수익률 × (1 - w3)]
해외 인프라	「OECD CPI 상승률(실제치) + 5%」의 원화헤지 기준 수익률
헤지펀드	HFRI FoFs × 0.5 + [미국단기금리(T-bills 90일물) + 4.5%] × 0.5

1) w1 : 국내 사모 지분형 투자의 당해 연도 비중
2) w2 : 적용시점 최초 50% 설정 후 연도마다 10%p 씩 증가(2018년부터 IPD한국지수만 사용)
3) w3 : 벤치마크 적용시점부터 신규 약정하는 투자 자산의 해당 자산군내 실제비중

[별표 3]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제16조 관련)

1. 국내주식

①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내주식의 내부운용은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며,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③ 국내주식의 위탁운용은 민간 기관의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투자 스타일을 다양화하며,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2. 국내채권

①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계열별(회사채)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일정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채권의 발행기관별, 계열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해외투자

① 해외투자의 목적은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② 해외투자시 외국의 우수 운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③ 장기적으로 기금성숙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분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여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의 현금화시 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④ 공단은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4. 대체투자

① 대체투자의 목적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②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등을 말한다.

③ 대체투자는 약정시점에서 일정기간 분산하여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약정한도를 부여한다.

④ 대체투자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 투자위원회와는 별도의 투자의사결정기구(“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⑤ 대체투자는 세부투자계획 수립,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언을 참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공단은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단기자금

① 단기자금이란 연금급여 지급 또는 중장기 자산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② 원화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운용기간 3개월 이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잔 미화 3억불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6. 대여거래

① 유가증권 대여거래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별표 4]

공시 대상 정보(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공시 대상
월간공시	▪ 조성·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주식 투자종목별 현황 (단,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 5%이상 종목) - 채권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현황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공시대상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별지 3>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

2018. 3. 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6.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하는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3. 공정한 직무수행
4. 비밀유지의무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본부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원들의 안건부의 요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외부인사 초청강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되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안)

2018. 3. 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관련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련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기금운용관련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거래기관 등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임·직원을 말한다.
3. "거래기관 등"이라 함은 기금운용관련 자문·감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자, 자산보관 또는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투자대상의 매매 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밀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기금의 이익과 기금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관련 정보로서 의결 또는 규정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대외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속한 모든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기본 원칙

제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원 및 직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①위원 및 직원은 법 제83조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직원은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3장 행위 기준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위원 및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직원은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직위남용 금지) 위원 및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밀정보의 관리) ① 위원 및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밀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②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 및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준수서약

제11조(준수서약) ① 위원 및 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의 관련자가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강령의 준수에 대한 서면 동의로서 별지의 서약서를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관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직원은 제2항의 서약서 제출 이후 윤리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항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시 조치) ①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및 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령을 준수하였을 경우 그 손실 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위 점검

제13조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신고) ①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의결권행사 결정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 및 매매한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내역을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가 있을 경우,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해상충 확인) ①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해상충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참석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서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의결일 현재 기금운용 관련 위원 및 직원에 해당되는 경우 준수서약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 이 강령의 의결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위원회의 개최일 이내
2. 직원 : 이 강령의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 1호 서식]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본인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한다.

2. 본인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일자 _____

소속 _____

성명 _____

서명 _____

[별지 제2호 서식]

유가증권 등 [□ 보유 / □ 매매] 신고서

본인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 또는 매매 유무

(. . 기준)

내 용		예	아니오
보유	본인은 현재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매매	본인은 위촉 이후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매**하였습니다.	□	□

2. 보유(매매)내역

거래증권사	종목명	수 량	비 고

신 고 일 : . . .

소속: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의뢰(대리)인

○ 성　　명 :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자등록번호 : 138-83-0037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2. 금융거래 정보제공 범위

○ 아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외 위원 위촉일 이후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

위원위촉일	거래일자	거래 증권사	종목	거래구분	거래수량

3. 동의서 유효기간 : 20 . . .까지

20 . . .

계좌주(본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 개최연월일 :

○ 위원명 : (인 또는 서명)

<이해상충 확인내용>

본인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과 다음 각 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2.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 자문,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확인	
	해당	비해당
1.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2.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 자문,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본인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결정과 관련한 이해상충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